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2024-7 제출연월일: 2024년 1월 16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적자가 발생한 마을버스 업체를 재정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의 지속적 운행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강서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다. 재정지원(안 제3조)
- 라.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지원제외(안 제4조~제6조)
- 마. 준용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 2)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11.29.~2023.12.20.) 결과 : 의견 없음
 - 2) 사전검토 완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 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자
 -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 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따른다)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 ③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
- 2. 월 운행률 내역
- 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내역서
- 4. 차량등록현황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이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										
	성	명				생 년 월	월 일			
신 청 인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등록 차량대수		·		재정지원 차량대수				지원 냥대수		
월 운송수입금					19	실 1대당 수입금				
서울시 지원금액										
재정지원 신청금액										
재정지원 사용계획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_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거래은행	은 행 명			0		예	금 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 월 운행률 내역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현금수입, 광고수입) 내역서 차량등록현황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3. 미첚부 사유

- 조례안 제3조의 재정지원금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소요 예산액

: 4,200천원 × 12개월 = 50,400천원

4. 작성자 :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과장 최철호

(담당 : 행정7급 민은주 / ☎2600-4128)

붙임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 3.~9. 생략
 - ② 생략
 -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④ 생략

⑤ 시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구청장이 그 필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적자가 발생한 마을버스 업체를 재정지원함으로써, 마을버스의 지속적 운행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강서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재정지원(안 제3조)
- 재정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 지원제외(안 제4조~제6조)
- 준용규정(안 제7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의 강서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 기 위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외에도 적자가 발생한 마을버 스 업체를 재정 지원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한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 가 번 호	2023-35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정용훈		
입안주무부서	교통행정과		2023. 12. 5.				
관련조문		7	조치사항				
- 조례 전부개정	안	- 부패유발	-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서울강서031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관부서	부서명	교통행정과					
	담당자명	민은주	전화번호	02-2600-412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마을버스 지원대상을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일반화함으로써 마을 버스의 지속적 운행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강서구민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과 관련 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획서 의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교통행정과장 귀하